제1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0. 10. 29.)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경기〕

<의안번호 제2010 - 51호>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Ⅰ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0. 10. 18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0. 10. 19

Ⅱ 계획의 필요성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중장기적인 지역보건 의료 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건강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Ⅲ 계획의 주요내용

1.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의 개요 (p1 ~ p8)
2.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 비전 및 목표 (p9 ~ p10)
3. 지역사회 현황분석 (p11 ~ p50)
4.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수립 (p51 ~ 78)
5. 개별 보건사업 계획 (p79 ~ 182)
6. 보건소 현안사업 및 군수공약사업 현황 (p183 ~ p198)
7. 지역 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 (p199 ~ p207)
8. 관련자료 및 부록 (p209 ~ p231)

Ⅳ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등)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시기)

○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지침(보건복지부)

Ⅴ 검토의견

○ 동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군의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계획안을 수립·제출한 것으로

○ 동 계획서의 계획수립 대상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으로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 보건의료 사업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기키고 궁극적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지역 보건의료 사업의 길잡이 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 동 계획서 수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계획수립의 개요 및 비전과 목표, 지역사회 현황분석
-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수립
- 계획기간내의 개별 보건사업 계획
- 보건소 현안사업 및 군수공약사업 현황
- 지역 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 및 부록순으로 수립되어 있음.

○ 먼저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시기에 대하여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보건 의료 계획 및 그 연

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는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음에도

- 2010. 10월에 제출함으로서 시기를 일실하였고,

○ 동 의료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 사항에서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 지역의 건강수준 (p23, p35)분석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 물리적·사회경제학적 특성, 건강수준, 건강에 미치는 요인, 건강형평성 등에 대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파악할 수 있으나, 인구현황의 경우 유소년, 장년, 노년 등으로 단순하게 나열하고 있고 이 또한 관련 통계자료를 대부분 2008년도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음.

특히, 보건의료 자원현황이나 의료이용 현황, 환경보건 수준, 현황 등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2)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도 (p36~p40)조사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주민이 가장 관심있는 건강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비전, 목적, 목표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모임, 좌담회,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조사가 필요하나,

동 계획의 경우에는 2010. 7. 26 ~ 7. 30까지 1회에 한하여 설문조사하였으며, 또한 조사항목도 주민의 관심도 조사보다는 보건소 이용만족도, 청소년 흡연문제 등 단순 형식에 거친 조사로 소홀히 한 경향이 있음.

3) p53~p73의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에 있어서 중점과제 선정은 p32~p33의 10대 사망원인(1순위 신생물, 2순위 뇌

질환, 3순위 심장질환)에 근거하여 선정되어야 바람직하며, 또한 계획수립 지침에서도 중점과제의 선정 원칙은 지역주민의 관심 항목으로서 가급적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고 있음.

○ 이상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승인과 관련한 의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추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향후 계획서 수립시에는 보다 면밀하게 작성·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지역 보건법】

[시행 2010.12.30] [법률 제9847호, 2009.12.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정리 및 활용,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도는 당해 시·도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인력확보, 자질향상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시·군·구는 당해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수요 측정
2.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방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필요한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조(보건소의 설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보건의료원) ① 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9조(보건소의 업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소의 조직) 보건소의 조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전문인력의 적정배치등) ① 보건소에는 소장과 제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등"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간에 전문인력등의 교류를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에 대하여 그 배치 및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배치 및 임용자격기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대상, 기간, 평가, 그 결과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시설의 이용) 보건소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등) ①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장비 등) ①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 삭제 <2004.12.30>

제17조(보건소등의 회계)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소화할 수 있다.

제18조(건강진단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보조하는 경우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 이내로 하고,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04.12.30>

제20조(보고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제23조 삭제 <1999.2.8>

제24조(권한의 위임등) ①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1999.2.8>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8>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0. 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등) 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4.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한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6.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확보계획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태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되 국가 또는 시·도의 보건의료시책과 부합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2주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다만,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11월말까지로 한다. <개정 1999.8.7>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 또는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6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해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해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7조(보건소의 설치)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7.10.4, 2008.2.29, 2008.12.31, 2010.3.15>

제8조(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한다)마다 1개소씩으로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 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9조(보건소의 조직기준)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의 조직기준을 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8.2.29, 2008.12.31, 2010.3.15>

②보건소의 조직은 당해 시·군·구의 인구규모, 지역특성, 보건의료수요등을 감안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

다.

③보건소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건소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인력등의 배치기준)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의무·치무·약무·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영양·보건통계·전산등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등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12조(보건지소장) ①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인을 두되,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13조(전문인력등의 임용자격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등의 배치를 위한 임용자격기준은 해당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되, 당해 분야의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임용 하여야 한

다.

제14조(전문인력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등의 신규임용을 위한 기본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받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5조(전문인력등의 배치 및 운영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등의 배치 및 운영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대하여 수시로 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전문인력등의 적절한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전문인력등의 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6조(전문인력등의 결원보충)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 전문인력등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결원보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배치받기를 희망하는 전문인력등(이하 이 조에서 "임용희망자"라 한다)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인력등의 결원보충을 위하여 임용희망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희망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임용희망자의 명부에 등재된 자중에서 임용희망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7조(교육훈련의 대상등)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과정

별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교육훈련은 당해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신규로 임용되는 전문인력등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훈련기간은 3주이상으로 한다.

2. 전문교육훈련은 보건소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재직중인 전문인력등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훈련기간은 1주이상으로 한다.

제18조(시설이용의 편의제공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시설이용, 실험 또는 검사의 의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1999.8.7>

제20조 삭제 <1999.8.7>

제21조 삭제 <1999.8.7>

제2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진료

2.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예방업무중 방역소독 업무

3. 법 제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4. 법 제9조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 실험 또는 검사업무

5. 법 제9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

2. 법 제9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조, 실비변상 기타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